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 리포트

■ 중국 지적재산권의 시장 특징과 시사점
- 중국내 특허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목 차

- 중국 지적재산권의 시장 특징과 시사점
 - 중국내 특허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Executive Summary	i
1. 중국, 글로벌 거대 지재권 시장으로 도약	1
2. 중국의 특허시장 현황	2
3. 시사점	12

Executive Summary

< 요약 >

■ 중국, 글로벌 거대 지재권 시장으로 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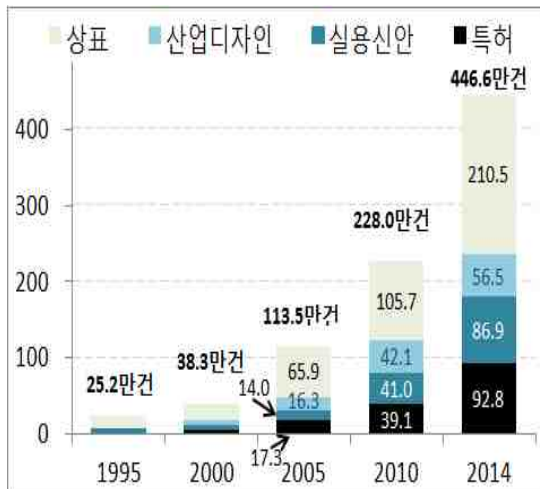
2000년대 중후반부터 글로벌 국가들의 중국 내 지재권 출원이 급증하면서 중국은 글로벌 거대 지재권 시장으로 도약했다. 전 세계 지재권 출원건수가 1995년 325만 건에서 2014년 967만 건으로 약 3배 증가하는 동안, 중국 내 지재권 출원건수는 25만 건(7.8%)에서 447만 건(46.2%)으로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특허의 출원이 1.9만 건에서 92.8만 건으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였다.

< 글로벌 지재권 출원 현황 >
(만 건) (비중,%)



자료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주 : 지재권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디자인), 상표 등 4가지 분류를 포함함.

< 중국 내 지재권 출원 현황 >
(만 건)



자료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 중국의 특허시장 현황

본 보고서에서는 지식재산권의 분류기준 중에서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상표 등을 제외하고 특허를 중심으로, 중국의 특허관련 법률체계를 살펴보고 중국의 특허청에 해당하는 SIPO에 출원한 특허의 동향분석을 통해 중국 지재권 시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중국 특허의 법률영역은 주요국가와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우리나라가 실용신안, 특허, 디자인에 대해 각각 독립된 법체계를 갖고 있는 것과는 달리, 중국은 미국과 비슷하게 전리법(專利法)이라는 단일 법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중국은 전리법 체계의 발전이 뒤쳐져 있다가 최근 8년간 반복적인 법 개정을 통해 글로벌 기준에 맞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지재권 분쟁 발생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3개의 지적재산권 전문법원을 통해 사법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지식산업국, 공상행정관리국, 품질관리감독국,

해관총서(세관) 등을 통해서도 행정보호 신청도 할 수 있다. ② **중국의 특허시장 규모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이다.** 2014년 현재, 중국에서 출원한 특허건수는 전 세계의 34.6%에 해당하는 92.8만 건으로, 미국 21.6%(57.9만 건), 일본 12.2%(32.6만 건), 한국 7.8%(21.0만 건)을 크게 앞서고 있다. ③ **중국에 특허출원을 신청하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이 과반수를 차지한다.** 2014년 현재, 중국에 출원한 특허는 거주자가 80.1만 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비거주자(외국)로는 미국이 최근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4년 현재 3.4만 건을 기록했으며 일본은 4.0만 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 현재 비거주자 중에서 미국과 일본의 비중은 58.5%를 차지한다. 한국은 중국에서의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전기기계(Electrical machinery), 컴퓨터기술(Computer technology) 분야에서의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으나,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의 출원 건수에는 여전히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④ **중국이 집중 육성하고 있는 전략적 신흥산업 분야 중에서 차세대 IT 및 바이오 기술 부문이 대세이다.** 2010~2014년 사이 중국에 등록된 전략적 신흥산업 관련 특허 건수는 연평균 19.8%씩 빠르게 증가하였다. 2014년 현재 특허출원 건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바이오(83,577건) 분야와 차세대 IT기술(79,016건)로 나타났다. 신에너지 자동차 분야에서의 특허출원 건수는 상대적으로 기타 분야보다 적으나, 2010~2014년 사이 연평균 23.7%씩 증가하는 등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중국에서 전략적 신흥산업의 특허출원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과 일본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독일과 비슷한 수준이다. ⑤ **중국에서의 특허분쟁은 최근 3년간 연평균 86%씩 급증하였다.** 2006~2014년 사이 특허분쟁 소송 입안건수는 1,227건에서 7,671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12~2014년 3년간의 입안건수는 연평균 85.7%에 달한다. 이는, 최근 들어 독일, 미국, 일본 등 국가의 소송제기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중국의 특허시장 규모, 법률체계 등이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한국의 중국 내 특허시장 진출 성과는 기존의 '선진출 - 후등록' 관행 등 원인으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의 기술우위 분야인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특허출원 건수가 독보적으로 많고, 미래 유망산업인 신에너지 자동차 분야에서의 특허출원 건수는 미국, 독일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등 기술선점 잠재력이 큰 것을 평가된다.

■ 시사점

최근 중국 지재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중국내에서 국가 간 특허 출원 경쟁뿐 아니라, 특허 관련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공적인 對中 진출을 위한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IT, 전기전자 등 전통적 우위산업의 R&D 기반을 활용하여 파생기술 개발과 같은 기술 선진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원천기술,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중요한 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민관 협력으로 집중적인 기술 육성책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한중 FTA 등 제도적 틀을 적극 활용하여 중국에서의 지재권 침해를 사전에 줄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1. 중국, 글로벌 거대 지재권 시장으로 도약

○ 2000년대 중후반부터 글로벌 국가들의 중국 내 지재권 출원이 급증하면서 중국은 글로벌 거대 지재권 시장으로 도약

- 전 세계 지재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포함) 출원건수 중에서 절반 가까이는 중국에 등록
 - 전 세계 지재권 출원건수는 1995년 325만 건에서 2014년 967만 건으로 약 3배 증가
 - 동기간 중국에서의 출원 비중은 7.8%에서 46.2%로 급증
- 지재권 중에서도 특허의 출원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1995~2014년 사이 중국 내 지재권 출원건수는 25.2만 건에서 446.6만 건으로 연평균 16.3%의 속도로 증가
 - 동기간 특허는 연평균 22.8%의 속도로 1.9만 건에서 92.8만 건으로 급증
 - 2014년 현재, 전 세계 특허출원 268.1만 건 중에서 중국(92.8만 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34.6%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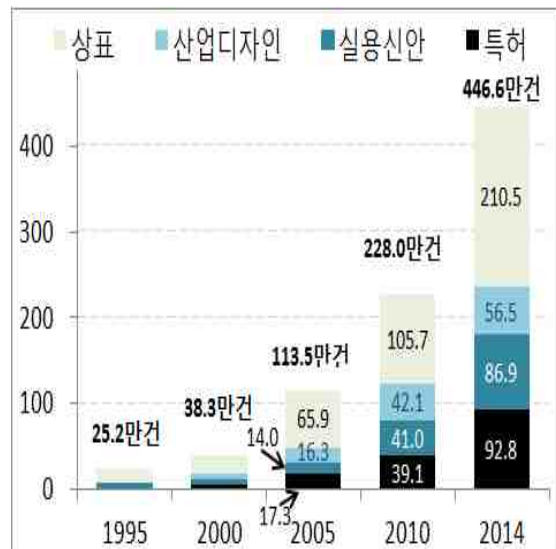
< 글로벌 지재권 출원 현황 >
(만 건) (비중,%)



자료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주 : 지재권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디자인), 상표 등 4가지 분류를 포함함.

< 중국내 지재권 출원 현황 >
(만 건)



자료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2. 중국의 특허시장 현황

1) 중국 지재권 시장 특징

- (연구방법) 중국의 지식재산 관련 행정이슈를 살펴보고 국가지식산업국(SIPO, 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國家知識產權局)에 출원한 특허(Patent)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함
-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특허관련 법률체계를 살펴보고, 중국의 특허청에 해당하는 SIPO에 출원한 특허의 동향분석을 통해 중국 지재권 시장을 살펴보고자 함
 - 지식재산권의 분류기준 중에서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상표 등은 본 보고서 연구범위에서 제외함
 - 2000~2014년 사이 중국의 특허청에 해당하는 SIPO에 출원한 특허(Patent) 건수를 대상으로 분석
 - 세계 주요 지재권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 일본, 한국 등 주요국이 중국에서 산업별(WIPO기준 및 SIPO신흥전략산업 기준) 특허출원 현황 분석
 - 더불어, 중국에서의 특허관련 행정소송 건수 등을 통해 중국 지재권 시장을 살펴보고자 함

< 본 보고서 연구 범위 >

구 분	주 요 내 용	데이터
① 특허의 법률영역	· 중국 지식재산권법의 구분 · 사법구제 및 행정구제 경로 등	-
② 특허시장 규모	· 세계 및 주요국의 대중국 특허출원 현황 · 특허출원 방식 (직접출원, PCT출원) 등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③ 특허출원 국가	· 한국, 미국, 일본 등 국가의 특허출원 현황 · 국가별 특허출원 상위 5가지 기술분야 등	WIPO
④ 신흥산업의 특허	· 산업별 특허출원 현황 · 산업별 주요국가의 출원 비중 등	국가지식산업국 (SIPO)
⑤ 특허분쟁 소송	· 특허침해 사례 건수 · 국가별 특허침해 소송 건수 등	SIPO

① 특허의 법률영역 : 주요국가와 대동소이(大同小異)

○ 중국은 최근 지재권 관련 법규개정을 통해 글로벌 기준에 근접하고는 있으나, 한국과는 다소 상이한 법률체계를 운용

- 한국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 대해 각각 독립된 법체계를 갖고 있는 것과는 달리, 중국은 미국과 비슷하게 전리법(專利法)에 일괄
 - 중국의 특허권은 한국이나 일본과 달리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등을 포괄한 하나의 전리법을 따름
- 중국은 전리법 체계의 발전이 뒤쳐져 있다가 최근 8년간 반복적인 법 개정을 통해 글로벌 기준에 맞는 체제를 구축
 - 중국 전리법은 개혁개방의 요구에 따라 1984년에 처음 도입되었다가 1992년에 1차 개정 실시
 - 그 뒤로, 2000년 WTO에 가입하면서 2차 개정을 실시하였으며 2008년의 3차 개정을 통해 법적 수준이 국제화 추세에 부응
 - 2014년에는 4차 개정을 실시하였으며, 상표법 3차 개정과 저작권법 3차 개정도 진행
 - 2008년 이후부터는 특허, 실용신안 등을 중국경제의 질적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개정함

< 주요국 지적재산권 관련 법체계 비교 >

한국 / 일본		중국		미국	
지적재산권	관련법	지식재산권	관련법	지적재산권	관련법
특허권	특허법	전리권 - 발명전리권 - 실용신안전리권 - 디자인전리권	전리법	특허권 - 실용특허권 (특허, 실용신안) - 디자인특허권 - 식물특허권	특허법
실용신안권	실용신안법				
디자인권	의장법 (디자인보호법)				
상표권	상표법	상표권	상표법	상표권	상표법
저작권	저작권법	저작권	저작권법	저작권	저작권법

자료 : 각국 지재권 관련 법체계 참고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 (사법보호) 중국은 3개의 지적재산권 전문법원이 지재권 관련 분쟁을 조정
 - 2014년부터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3개의 지적재산권 전문법원에서 1차적으로 조정
 - 중국 지적재산권법원은 전리, 집적회로설계, 기술비밀 등에 대한 1심 재판을 담당
 - 특히, 특허권은 지적재산권 전문법원과 고급인민법원을 차례로 거쳐 보호 받을 수 있음

- (행정보호) 행정구제를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국가지식산권국 외에도 공상행정관리국, 품질관리감독국, 해관총서(세관) 등이 있음
 - 중국의 대표적인 지재권 행정구제 기관인 국가지식산권국은 전리권 침해 행위, 전리 사칭행위, 전리 허위표시 등을 단속
 - 전리출원 수리 및 심사를 총괄하는 국가지식산권국을 중심으로 공상행정관리총국, 품질관리감독국, 해관총서(세관) 등으로 각각의 업무권한을 분담¹⁾
 - 그러나 상기 행정구제 기관은 지재권에 대한 기술적 전문성이 높지 않아 사법구제보다 단속의 실효성이 낮음

< 중국의 지적재산권 법원 체계 >

법원	관할범위
기층인민법원 (지방법원지원)	· 상표권, 저작권 등의 1심
지적재산권법원 중급인민법원 (지방법원)	· 특허권, 실용신안, 디자인, 영업기밀 등 전리권의 1심 · 상표권, 저작권 등의 2심
고급인민법원 (고등법원)	· 특허권, 실용신안, 디자인, 영업기밀 등 전리권의 2심 · 소송가액이 크거나 중요한 사건의 1심
최고인민법원 (대법원)	· 소송가액이 크거나 중요한 사건의 2심

자료 : 중국 지재권 법체계를 참고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주 1) ()는 상응한 한국의 사법기관을 의미함.

2) 지재권 관련 소송은 중국에서는 2심제, 한국에서는 3심제를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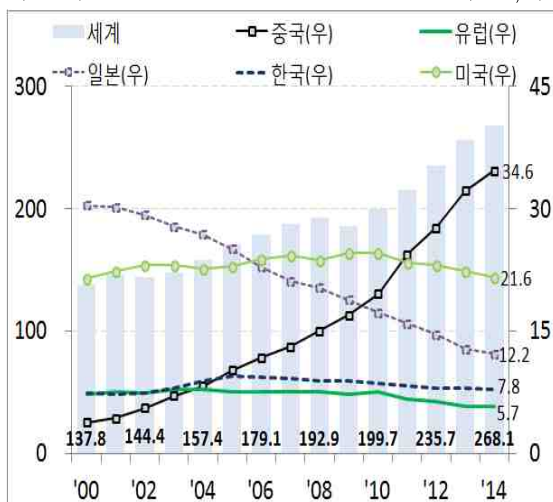
1) 국가지식산권국은 전리권 부여 업무, 해외출원 업무 등을 처리. 공상행정관리총국은 상표권 침해행위 등을 단속. 품질관리감독국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제조허위표시 행위, 품질표시 허위기재 행위 등을 단속. 해관총서(세관)은 전리권, 상표권을 침해하는 수출입화물의 통관행위 등을 단속함.

② 특허시장 규모 : 전 세계 최대 규모

○ 최근 중국 현지기업들의 특허출원이 급증하면서 중국의 특허출원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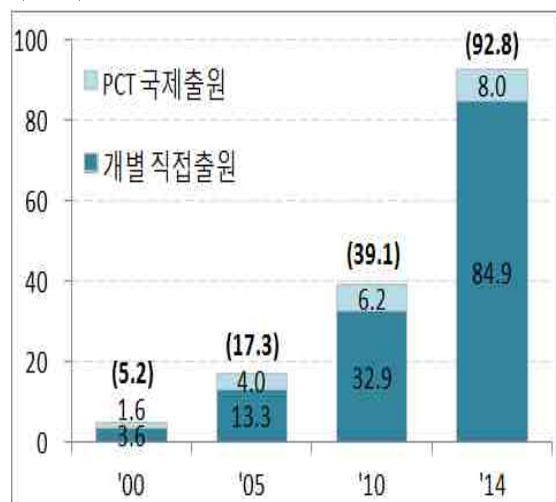
- 최근 중국 내에서 출원하는 특허 건수는 미국, 일본을 크게 넘어섬
 - 세계 전체 특허출원 건수는 2000년 137.8만 건에서 2014년 268.1만 건으로 약 2배 정도 증가
 - 2014년 현재, 중국에서 출원한 특허건수는 92.8만 건으로 전 세계의 34.6%에 해당하며 미국 21.6%(57.9만 건), 일본 12.2%(32.6만 건), 한국 7.8%(21.0만 건)을 크게 앞섬
- 중국에서의 특허출원은 직접출원이 대부분이며 PCT 국제출원은 다소 부진2)
 - 중국내 특허의 개별 직접출원 건수는 2014년 현재 84.9만 건으로, 2000년의 3.6만 건보다 약 24배 증가
 - 한편, 2014년 현재 중국에서 출원한 특허건수 92.8만 건 중에서 PCT 국제출원 건수는 8.0만 건으로 전체의 9.7%에 그침
 - PCT 국제출원은 특허 확보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제도 중의 하나로, 해당 특허시장에 효율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방법임

< 주요국 내 특허출원 비중 현황 >
(만 건) (비중,%)



자료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 중국 내 직접/국제 특허출원 현황 >
(만 건)



자료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주 : ()는 직접출원, 국제출원 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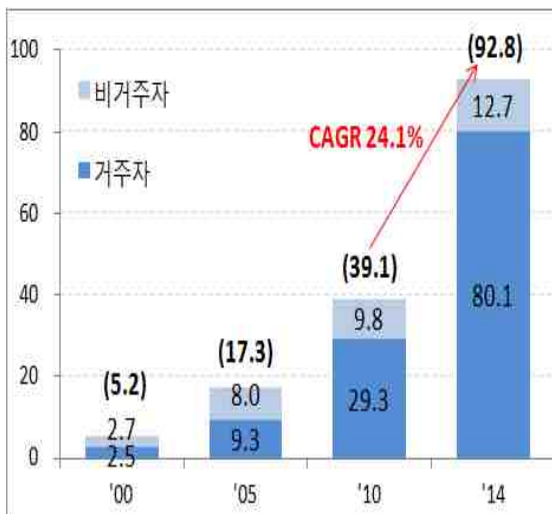
2) 특허의 직접출원, PCT국제출원 방식 설명은 【부록1】 참고.

③ 특허출원 국가 : 미국, 일본이 과반수

○ 미국의 중국 내 특허출원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미약한 수준

- 중국 특허출원 시장은 최근 4년간 중국 거주자³⁾의 특허출원 신청이 급증하면서 빠르게 성장
 - 2014년 현재, 중국에 출원한 특허는 거주자가 80.1만 건으로 대부분을 차지
 - 이는 최근 들어 중국 현지기업들의 소프트파워가 강해지고 있음을 의미함
- 한편, 비거주자 특허출원 비중은 미국, 일본이 과반을 차지하며, 특히 미국은 최근 소폭 증가세를 보임
 - 비거주자 중 일본은 2014년 현재 31.8%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3년간 감소 추세를 나타냄
 - 반면, 미국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현재 26.7%(3.4만 건)를 기록
 - 2014년 현재 미국과 일본의 비중은 58.5%를 차지함
 - 한편, 한국은 2000년 5.9%(0.2만 건)에서 2014년 9.1%(1.2만 건)로 다소 증가

< 중국 내 거주자/비거주자 특허출원 현황 >
(만 건)



자료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주 : ()는 비거주자, 거주자 합산.

< 주요국의 중국 내 특허출원 비중 >
(비중,%)



자료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주 : 비거주자의 합을 100%로 봤을 때, 주요국의 비중을 의미함.

3) 전 세계 지적재산권 출원은, 해당 지재권 당국의 관할권 내에 거주하는 신청인(거주자, Resident)과 관할권 외에 거주하는 신청인(비거주자, Non-Resident)으로 구분함.

○ 주요 기술분야(WIPO 분류기준)에 대한 주요국의 특허출원도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음

- 한국은 전기, 컴퓨터 등 전기공학(Electronic Engineering)분야에서의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으나, 절대적 규모는 부족
 - 한국은 2010년 이후 중국에서의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전기기계(Electrical machinery), 컴퓨터기술(Computer technology) 분야에서의 특허출원이 급증
 - 그러나 중국은 물론,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의 출원 건수에는 여전히 크게 못 미치는 실정
 -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측정기술(Measurement), 제약(Pharmaceutical) 분야에서도 주요국에 비해 기술선점이 지연

< 주요국의 중국 내 특허출원 TOP5 기술 분야 >

(단위: 건)

순위	2005년	전체	거주자	비거주자		
			중국	미국	일본	한국
1	제약	10,940	8,040	1,002	382	56
2	컴퓨터기술	10,373	4,038	2,157	1,962	539
3	전기기계	10,080	3,602	986	3,123	915
4	오디오영상기술	9,518	2,269	662	3,685	1,162
5	디지털통신	7,338	3,231	1,356	944	388

순위	2010년	전체	거주자	비거주자		
			중국	미국	일본	한국
1	전기기계	24,409	15,544	2,096	3,313	548
2	디지털통신	23,135	17,519	1,931	1,194	452
3	컴퓨터기술	19,544	11,892	2,512	1,724	474
4	측정기술	17,249	13,215	1,057	1,085	154
5	제약	15,307	11,422	1,824	416	88

순위	2014년	전체	거주자	비거주자		
			중국	미국	일본	한국
1	전기기계	59,424	44,710	2,828	5,753	1,399
2	컴퓨터기술	54,554	42,696	5,077	2,131	1,306
3	측정기술	47,701	41,483	1,853	1,668	257
4	디지털통신	40,930	32,969	3,204	1,461	699
5	제약	34,923	29,226	3,257	421	189

자료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주 : WIPO의 산업분류 기준은 【부록2】 참고.

④ 신흥산업 특허 : 차세대 IT 및 바이오 기술 부문이 대세

○ 중국이 집중 육성하고 있는 산업분야에서의 특허출원 건수가 연평균 20%씩 빠르게 증가

- 중국은 지난 2010년 '12차 5개년(2010~2015년) 계획'에서 전략적 신흥산업을 처음으로 규정
 - 중국은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특허 등 소프트파워를 키우고자 에너지절약·환경보호, 차세대 IT, 바이오, 고성능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등 7대 분야를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규정
 - 2010~2014년 사이 중국에 등록된 전략적 신흥산업 관련 특허 건수는 연평균 19.8%씩 빠르게 증가
- 차세대 IT, 바이오 등 분야의 특허출원 건수가 가장 많으며, 신에너지 자동차 기술의 증가속도가 가장 빠름
 - 2014년 현재 특허출원 건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바이오(83,577건) 분야와 차세대 IT기술(79,016건), 에너지절약·환경보호기술(70,559건)로 나타남
 - 신에너지 자동차 분야에서의 특허출원 건수는 상대적으로 기타 분야보다 적으나, 2010~2014년 사이 연평균 23.7%씩 증가하는 등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임

< 중국 내 전략적 신흥산업의 특허출원 현황 >

(단위 : 건, 증가율%)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CAGR
전 체	153,766	175,879	236,072	270,578	316,235	19.8
에너지절약·환경보호	31,917	36,049	51,194	57,758	70,559	21.9
차세대 IT기술	44,394	50,625	61,924	70,963	79,016	15.5
바이오기술	38,851	43,233	57,604	65,961	83,577	21.1
고성능 장비제조	8,662	10,105	13,707	16,045	18,106	20.2
신에너지	9,542	12,504	16,781	19,156	19,395	19.4
신소재	17,725	19,851	30,109	34,354	39,321	22.0
신에너지 자동차	2,675	3,512	4,753	6,341	6,261	23.7

자료 : 國家知識產權局(SIPO).

주 1) 비거주자, 거주자 합산.

2) SIPO의 전략적 신흥산업 분류 기준은 【부록3】 참고.

○ 중국에서 전략적 신흥산업의 특허출원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과 일본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독일과 비슷한 수준

- 비거주자의 출원만 볼 때, 미국과 일본의 특허출원 비중은 전체 비거주자의 50% 이상을 차지

· 2013년 미국과 일본의 특허출원 비중은 23.0%, 28.2%, 2014년은 각각 24.7%, 25.9%를 기록

· 한국은 2013년 7.4%에서 2014년 8.8%로 1.4%p 증가하였으나 10% 미만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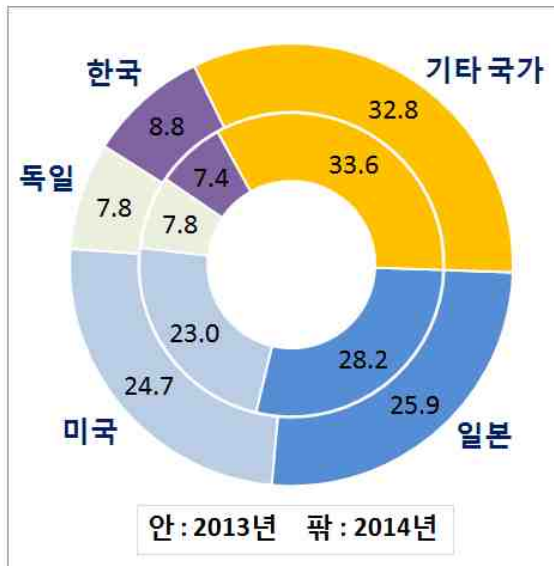
- 특허출원 비중 측면에서 한국은 독일과 비슷한 수준

· 제약, 바이오센서 등 바이오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36.4%)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한국은 4.7%에 그침

· 한국은 차세대 IT기술(15.3%) 분야에서의 특허출원 비중이 크지만, 미국(31.2%)과 일본(32.9%)의 절반수준

· 특히, 한국은 에너지절약·환경보호(11.8%), 신소재(10.9%) 등 분야에서는 출원 비중이 독일과 유사 양상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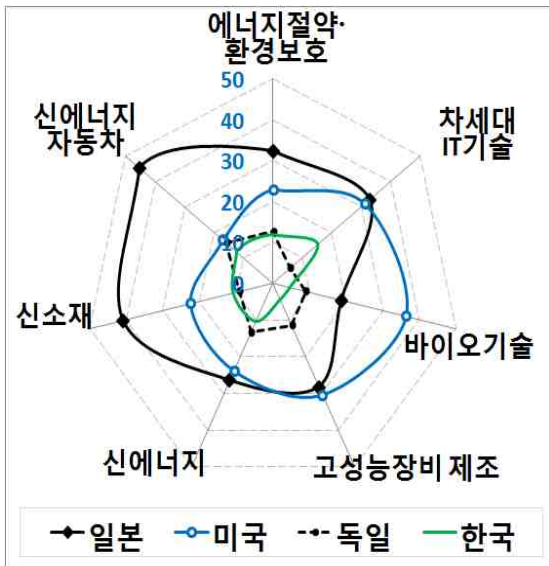
< 주요국의 전략적 신흥산업 특허출원 비중 >
(비중,%)



자료 : 國家知識產權局(SIPO).

주 : 비거주자(외국)의 합을 100%로 봤을 때를 기준으로 산정함.

< 2014년 주요국의 산업별 특허출원 비중 >
(비중,%)



자료 : 國家知識產權局(SIPO).

주 : 산업분야별 비거주자(외국) 합을 100%로 봤을 때를 기준으로 산정함.

⑤ 특허분쟁 소송 : 최근 3년간 연평균 86% 급증

○ 중국에서의 특허분쟁 소송 건수는 최근 3년간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소송제기가 증가세

- 최근 8년간 중국에서 특허분쟁 소송 입안(立案, Entertained)건수는 6배 이상 증가
 - 2006~2014년 사이 특허분쟁 소송 입안건수는 1,227건에서 7,671건으로 연평균 25.7%의 속도로 증가
 - 특히, 2012~2014년 최근 3년간의 입안건수가 연평균 85.7% 급증
- 이는, 최근 들어 독일, 미국, 일본 등 국가의 소송제기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임
 - 독일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의 입안건수는 2012년 29건에서 2014년에는 109건으로 가장 많음
 - 미국과 일본도 2014년 현재 각각 62건, 58건으로 나타난 반면, 우리나라는 7건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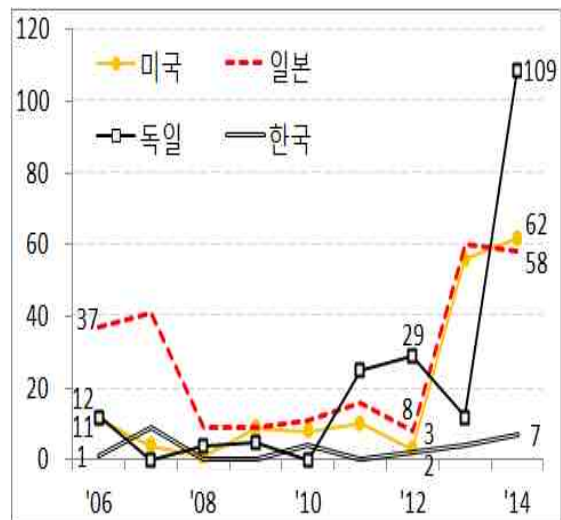
< 중국에서의 특허분쟁 소송 건수 > (건)



자료 : 國家知識產權局(SIPO).

- 주 1) 지적권 침해분쟁 소송의 입안(Entertained) 건수 기준임
- 2) 중국 자국민/기업 (거주자)의 소송건수도 포함함.

< 주요국이 제기한 특허분쟁소송 건수 > (건)



자료 : 國家知識產權局(SIPO).

- 주 : 지적권 침해 분쟁 소송의 입안(Entertained) 건수 기준임.

2) 종합평가

- 중국의 특허시장이 최근 글로벌 수준으로 성숙되고 있으나, 특허 소송 등 분쟁이 급증하면서 여전히 우려스러운 양상을 보임
 - 중국의 특허시장 규모, 법률체계 등이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된 것으로 평가됨
 - 중국은 2000년대 중반까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통한 기술이전과 기술 파급효과를 기대
 - 그러나 기대만큼 기술수준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 하에 기술 자주혁신(自主創新) 강화를 위해 기술투자 확대와 지적권 보호체계를 확립
 - 이에 따라, 최근 중국 기업 및 개인(거주자)의 특허출원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중국의 지적재산권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음
 - 반면, 한국의 중국 내 특허시장 진출성과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임
 - 한국은 기술과 제품에 대한 우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의 특허출원이 상대적으로 부족
 - 이는, 對 중국 수출, 투자 등 현지진출을 우선 진행하고, 그 다음 관련된 지적권 등록을 신청하는 ‘선진출 - 후등록’ 관행을 보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함
 - 한편, 한국의 기술우위 분야인 정보통신, 자동차 기술 분야에서는 기술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잠재력이 상존
 -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차세대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의 특허출원 건수가 가장 많음
 - 또한, 미래 유망산업인 신에너지 자동차 분야에서의 특허출원 건수는 미국, 독일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등 기술선점 잠재력이 큰 것을 평가됨

< 중국 특허시장 평가 >

구 분	내 용
① 특허의 법률영역	· 중국 특허 관련 법률체계가 글로벌 기준에 근접
② 특허시장 규모	· 전세계 최대 규모의 특허출원 대상국(filing office)으로 성장
③ 특허출원 국가	· 미국과 일본이 주도 · 한국은 절대적 규모면에서 주요국에 열위
④ 신흥산업의 특허	· 차세대 IT, 바이오 기술부문이 대세 · 한국은 차세대 IT분야에서 선전, 에너지절약·환경보호, 신소재 분야에서 독일과 비슷한 수준
⑤ 특허분쟁 소송	· 독일, 미국, 일본 등 국가의 소송이 급증 · 한국은 연간 7건 미만으로 적은 수준

3. 시사점

- 최근 중국 지재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중국내에서 국가 간 특허 출원 경쟁뿐 아니라, 특허 관련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공적인 對中 진출을 위해 미래 산업 육성 분야에 대한 지재권 역량 강화가 필요
 - 첫째, IT, 전기전자 등 전통적 우위산업의 R&D 기반을 활용하여 파생기술 개발과 같은 기술 선진화 전략이 필요
 - IT, 생명공학, 인체공학 등 융합산업 분야의 신생기술, 파생기술을 내부화하고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
 - 특히,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 분야 중 우리나라 미래성장동력과 중복되는 스마트자동차, 첨단신소재, 통신기술 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꾸준한 일관된 정책 육성이 요구됨
 - 둘째, 원천기술,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중요한 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민관 협력으로 집중적인 기술 육성案을 모색
 - 원천기술, 미래기술일수록 투자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동반되어야 함
 - 기술금융, 사업화제도 등 기반의 활성화를 통해 정부와 기업, 기업과 기업 사이의 기술협력을 강화하여 외국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의 근본적인 기술역량 제고가 필요
 - 셋째, 한중 FTA 등 제도적 틀을 적극 활용하여 중국에서의 지재권 침해를 사전에 줄이는 노력도 병행
 - 우리기업의 진출이 많은 중국에서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FTA를 통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증대됨
 - 현지 지재권제도, 행정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허 관련 인력 양성 노력도 꾸준히 지속할 필요가 있음

천용찬 선임연구원 (2072-6274, junius73@hri.co.kr)

한재진 연구위원 (2072-6225, hzz72@hri.co.kr)

【부 록 1】 지적재산권의 국제출원 방법

○ 특허 및 실용신안의 국제출원 :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 협력조약) 국제출원

-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개별 특허를 직접 출원하는 방법과 PCT 국제출원방법이 있음

- 개별 직접출원(Direct applications) 방법은 특허 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것을 말함
- 국제출원 방법으로는, 거주국의 특허청에 하나의 PCT 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로의 국내단계(서면 제출, 수수료 납부 등)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
- PCT 조약에는 2008년 12월 현재 139개국이 가입해 있음

○ 디자인의 국제출원 : 헤이그(Hague) 국제디자인출원

- 디자인의 국제출원은 특허와 비슷하게 개별국가에 각각 직접출원하는 전통적인 방법이 있음
- 또한, 국제출원 방법으로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에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하여 여러 계약당사자 영역에서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는 국제출원 제도도 있음
- 헤이그 시스템에 가입한 국가는 총 83개임

○ 상표의 국제출원 : 마드리드(Madrid) 국제상표출원

- 상표 출원은 개별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개별 개별 상표관리기구가 없는 경우 다수국 조약에 의한 지식재산권기구(예, 아프리카지식재산권기구)에 출원하는 방법이 있음
- 국제출원 방법으로는, 국내에 출원중이거나 등록된 상표를 기초로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작성하여 WIPO 국제사무국을 통해 기타 국가로 상표를 출원할 수도 있음
- 마드리드 시스템에 가입한 국가는 총 97개임

【부 록 2】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특허기술 분류기준

구 분	
전기공학 Electronic Engineering	전기기계/에너지, Electrical machinery, energy
	오디오/영상기술, Audio-visual technology
	원거리통신, Telecommunications
	디지털통신, Digital communications
	기본통신프로세스, Basic communication processes
	컴퓨터 기술, Computer technology
	전자상거래, IT methods for management
기구 Instruments	반도체, Semiconductors
	광학, Optics
	측정, Measurement
	생물물질분석, Analysis of biological materials
	기구제어, Control
화학 Chemistry	의료기술, Medical technology
	유기정밀화학, Organic fine chemistry
	바이오기술, Biotechnology
	제약, Pharmaceuticals
	고분자화학/폴리머, Macromolecular chemistry, polymers
	식품, Food chemistry
	기초재료화학, Basic materials chemistry
	재료/금속학, Materials, metallurgy
	표면기술/코팅, Surface technology, coating
	마이크로구조/나노기술, Micro-structural, nano-tech
화학공학, Chemical engineering	
기계 Mechanical Engineering	환경기술, Environmental technology
	기계조작, Handling
	공작기계, Machine tools
	엔진/펌프/터빈, Engines, pumps, turbines
	섬유/제지기계, Textile & paper machines
	기타특수기계, Other special machines
	열처리/장치, Thermal processes & apparatus
	기계요소, Mechanical element
운송, Transport	
기타 Other Fields	가구/게임, Furniture, games
	기타소비재물품, Other consumer goods
	토목공학, Civil engineering

【부 록 3】 SIPO(국가지식산업국)의 신홍산업 분야 특허기술 분류기준

구 분	
에너지절약·환경보호 산업기술	고효율 에너지절약 산업기술
	고도화 환경보호 산업기술
	자원순환이용 산업기술
차세대IT 기술	차세대 정보인터넷 산업기술
	전자핵심기초 산업기술
	고기술S/W 및 신형정보기술서비스 기술
바이오기술	생물제품제조 산업기술
	생물공정설비 산업기술
	생물기술응용 산업기술
고성능장비 제조기술	항공장비 산업기술
	위성 및 응용 산업기술
	궤도교통장비 산업기술
	해양공정장비 산업기술
	지능형생산제조장비 산업기술
신에너지 기술	핵발전 산업기술
	풍력에너지 산업기술
	태양광에너지 산업기술
	생물 및 기타 신에너지 산업기술
	스마트그리드 산업기술
	신에너지공정 및 연구개발서비스 기술
신소재 기술	신기능 재료 산업기술
	고도화 구조재료 산업기술
	고성능복합재료 산업기술
	프론트엔드 신소재 산업기술
신에너지자동차 기술	신에너지자동차 제조 산업기술
	신에너지자동차 부품 산업기술
	신에너지자동차 관련 시설 및 서비스 기술